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40 발의연월일: 2025. 6. 11.

발 의 자:전진숙·김용만·이수진

남인순 • 박지원 • 박해철

서미화 · 김문수 · 권향엽

김 유·정혜경·전종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,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의무를 명시하고,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등).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8(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피해자 가 사망하는 사건(이하 "가정폭력사망사건등"이라 한다)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응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.
 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 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가정폭력사망사건등 통계에 관한 사항
 - 2.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
 - 3.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권고에 관한 사항
 - 4.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결과에

관한 사항

- 제4조의9(가정폭력사망사건등 관련 자료 요청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,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(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)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필 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4조의10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.
 - ③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조사·분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4조의10(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 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정책, 제도 및 제4조의8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 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(이하 "검토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 -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1. 변호사
- 2.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
- 3. 제5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사자
- 4. 사회복지사 또는 가정폭력 담당 공무원
- 5. 의료기관 종사자
- 6. 그 밖에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④ 그 밖에 검토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발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제3호를 제1호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(종전의 제3호) 중 "제16조에"를 "제4조의9제3항 또는 제16조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신 설>

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

- 3.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권고에 관한 사 항
- 4.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

제4조의9(가정폭력사망사건등 관련 자료 요청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, 관계 기관・법인・단체의 장및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(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)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사망사건등에 대한 분석을 위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4 조의10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 건등 검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. <신 설>

- ③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조사·분석 관련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.
- 제4조의10(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) ① 여성가족부장 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정책, 제도 및 제4조의8에 따른 가정폭력사망 사건등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사망 사건등 검토위원회(이하 "검토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.
 -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변호사
 - 2.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
 - 3. 제5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

제20조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3. <u>제16조에</u>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

사자

- 4. 사회복지사 또는 가정폭력 담당 공무원
- 5. 의료기관 종사자
- 6. 그 밖에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④ 그 밖에 검토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사망사건등에 대한 발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.

제20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	_
	-
	_

- 2.·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- 1. 제4조의9제3항 또는 제16조

 에----